이　　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의 주장

○ 입주민들이 주, 야간의 각종 소음과 야간의 강한 빛 등으로 인하여 너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용산구청에 민원을 대량으로 발생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작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소음 등이 나아짐 없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음에 재정신청을 함

나. 피신청인의 주장

○ 당 현장의 공사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시는 OOO 입주민 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, 당사는 적법한 신고절차의 준수와 더불어 소음, 진동, 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, 방진망, 세륜 및 살수시설 등 법률에서 규정한 저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,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

○ OOO 관리단에서는 2016년 5월 30일에 이미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, 양측의 협의를 거쳐 2016년 8월19일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바 있음

○ 당사는 합의대로 합의금 15백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, 별도로 세대 당 1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약 380세대에 전달하였으며, 입대표 회의에 출석하여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 또한 전하였음

○ 따라서 OOO은 합의서 2조 3항에 명기되어 있는 향후 공사의 먼지 피해건과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

○ 덧붙여 공사 먼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음, 빛 공해 등 공사피해와 관련하여서도 합의서 상에 명문으로 기록하지만 않았을 뿐 이전에 기 신청한 분쟁조정 시 구두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오니 이점 다시 한 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

○ 가급적 소음발생 공종은 새벽, 야간시간을 피하여 계획하는 등의

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, 골조공사 이후에는 외부 커튼월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내부 마감작업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이 아니었음

○ 빛 공해의 경우 골조공사 수행 중 조도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설치되었던 투광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, 관련 민원 이후 신청인 측 방면의 투광등을 이설 완료하였으며, 이후에도 빛 공해 저감을 위하여 등기구 수량 감소, 투광등 덮개 설치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 담당 주무관과 함께 OOO에 빛 관련 피해유무를 확인하였으며, 공문으로 신청인 측에 빛 공해 관련 조치 완료 상태를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였음

○ 신청인 측의 피해요구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청드리며, 귀 위원회에서 중재 시에 당사 및 발주처가 신청인 측에 제공한 OOO 도로 확장공사비용(82백만 원), 기 집행된 합의금(15백만 원), 2016년 추석선물(3.8백만 원)을 감안하여 중재안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림

○ 끝으로 현재 준공인가를 받은 상태로 신청인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귀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 드림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현황

○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신청인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이며,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, 인근의 OO역과 근접하여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 등의 생활소음의 영향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은 아니며

○ 인접한 건물 신축공사 과장에서의 소음과 타워크레인 불빛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(재정) 신청사건이며,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공사완료되어 사용중임

나. 신청인 건물 현황

○ 건물명 : OOO

○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

○ 연면적 : 89,465.87㎡

○ 규모 : 지하7층, 지상36층(2개동)

○ 구조 : 철골철근콘크리트조

○ 주용도 : 아파트, 업무, 근생

○ 사용승인 : 2012.12.14

다. 피신청인 공사현황

○ 공사명 : OOO

○ 연면적 : 188,902.07㎡

○ 규모 : 지하7층, 지상22층

○ 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
○ 주용도 : 업무, 판매, 문화 및 집회, 근생

○ 공사기간 : 2014.9.5.~2017.11.3.

○ 시공사 : OOO

○ 시행자 : OOO

라. 피신청인 소음·비산먼지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

○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: 신고(2014.8.13.)

○ 피해예방 대책

· 방음벽(막)설치

· 출입구 자동 세륜시설 및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

마.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

○ 관할 행정기관(용산구청 맑은환경과, 도시계획과)에 공사소음 등의 피해로 수십 차례에 민원제기로 소음저감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소음 피해 평가

○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각 공정별로 주요 소음원인 건설장비의 투입일수를 산출함

○ 투입 장비별 소음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「건설장비 및 기계류의 소음·진동도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, 2011」와 국립환경과학원의 「건설기계류 소음특성, 2003」 자료를 참고하였음

○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경우 top-down 공법의 특성상 1층 슬래브가 시공된 이후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 굴착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은 슬래브에 의해 외부 전파가 차단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지하 굴착 작업으로 인한 소음은 평가에서 제외함

○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와의 최단 이격 거리는 약 40m 이지만, 현장 내에 다수의 소음원(건설장비)이 분포되어 있고 이동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소음원이 현장 중심부에서 동시에 가동한다고 가정하여 합성 소음원과 신청인 건물과의 최단 이격거리를 110m로 적용함

○ 피신청인의 공정별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투입장비 조합을 선정하고 소음원이 동시에 가동한다고 가정하여 합성소음도를 산출하였으며, 이때 5분간의 장비가동률을 100%(즉, 5분 동안 연속 작업)로 가정함

○ 투입장비 조합에 따른 합성소음도에서 소음원과 수음점까지의 이격거리와 가설방음벽에 의한 소음 감쇠량을 뺀 값을 수음점에서의 예측 소음도로 산출하고 주간시간대의 생활소음기준인 70dB(A)이하(상업지역, 주간)을 고려하여 초과 소음도를 산출함

나. 빛 공해 평가

○ 피신청인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조명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,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 불빛으로 인한 피해는 평가에서 제외함

4. 판 단

○ 소음도 평가결과 공사 시 최대소음도가 64.9dB(A)로 수인한도 기준인 70dB(A)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○ 공사 중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빛 공해 방지법에서 정한 조명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판단되지 않는다.

5. 결 론

○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전문가 의견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